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9. 1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9. 9.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하수과장 김 정 래

가.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하수도법이 1999. 2. 8.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되어 6월이 경과된 1999. 8. 9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규제와 관련된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이 삭제 및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호의 2)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부과조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지난 '99. 2. 8 개정되고 '99.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개정되는 사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바 이를 위반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2조제2호의 2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하수도법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김정래 하수과장) : 면적에 따라 부과됨.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은 있는지?
- 답변요지(김정래 하수과장) : '98년, '99년 현재까지는 부과한 실적이 없음.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관내에 재래식 변소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 답변요지(김정래 하수과장) : 환경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음.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 주택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용자등을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정래 하수과장) : 해당과에 본 취지를 통보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하수도법이 1999.2.8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되어 6월이 경과된 1999.8.9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규제와 관련된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이 삭제 및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과태료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부과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4호)

3. 개정근거 : 하수도법(1999.2.8 법률 제5868호)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제 42조제1항제2호의2 및 삭제된 종전 법제42조제2항제1호

4. 조 례 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부과대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생략)</p> <p>(신설)</p> <p>3.(생략)</p> <p>4. <u>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자</u></p> <p>5.~7.(생략)</p>	<p>제2조(부과대상)</p> <p>1.~2.(현행과 같음)</p> <p>2의2. <u>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u></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p>5.~7.(현행과 같음)</p>